

2015. 7.

바른 감사 바른 시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실

<http://www.jeonju.go.kr>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감사결과

감사개요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26. ~ 5. 29. (4일간)
- 감사범위 : '12. 4월 ~ '15. 3월말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결과 : 6건 지적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계획(천원)				신 분 상 심의결과(명)		
	계	시정	주의	계	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징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6	□	△							

주요 지적 사항

1.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탁사무)에 따라 (주)■■■물산은 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전기안전관리를 (유)◎◎전기안전관리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매년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구두에 의한 계약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었으며,

- 또한 자원화시설의 계약용량은 400Kw로써 안전대행업자에게 매월 2회 이상을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여 각종 전기재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201◇년 0월과 00월, 201▲년 0월, 201○년 0월, 0월, 00월, 00월, 201△년 0월에 월 1회만 점검한 사실이 있음.

2. 전기요금(역률) 절감에 관한 사항

- 전력에서 역률은 전기기기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공급된 전기가 의도한 목적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역률이 높다는 것은 전기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용량의 기기를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준 역률은 90%이다.
- (주)■물산에 부과된 201◎. 0월부터 201△년 0월까지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보면 총 000,000천원이 부과되었는데, 이중 역률이 평균 62%로써 기준역률 90%에 미치지 못하여 0,000천원의 역률요금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 00월과 201△년 0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부터 역률요금 절감을 위한 역률 개선용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여 전력사용 절감에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었음.

3. 사무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탁사무)에 따라 전주시가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 중 업무의 종류는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및 관리, 나.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다. 협잡물 관리 및 처리, 라. 부산물(사료원료 또는 퇴비원료)의 관리, 마. 음폐수의 관리 및 처리, 바. 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사. 시설물 운영 기록·유지 관리 등 일반 사무처리, 아.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자. 그 밖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및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이 있으며,

- 협약서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7항에 따라 (주)■물산은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주)■물산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2015.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은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4. 부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9조(자원화시설 운영) 제5항에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 및 발생된 폐기물은 (주)■물산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자원화시설 내·외에 적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주)■물산은 전주시에서 201○년 0월 00일, 201◇년 0월 00일 부산물이 출하되지 않고 방치되어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위험성이 있어 출하를 촉구 하였음에도, 201○년 0월 0일부터 00월 00일까지 발생한 부산물 총 0,000,000kg에 대하여 000일간 자원화시설 내·외에 적치한 사실이 있음.

5.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4항에 (주)■물산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전주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물산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위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주)■■■물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시설인 음식물투입 호퍼(1호기) 1차 투입 S/C 외 000개 중 201○년 0월 00일에 음식물투입 호퍼(1호기) 1차 저장 호퍼 투입 S/C 1번 외 00개 시설만 전주시에 증여. 인증하고, 음식물 투입 호퍼(2호기) 2차 저장호퍼 투입 S/C 1번 외 00개는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 (자원화시설 운전정지)에 의하면 자원화시설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 30일 전에 운전정지 내용과 반입음식물 처리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주)■■■물산에서는 2012년 5월 ~ 2015년 5월 현재 자원화시설 운전을 보일러 개방검사를 위한 세관 등의 사유로 0회 00일을 정지하였으며, 일시 중지나 장기간 중지 시 30일전에 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0회는 0일전 0회는 0일전에 승인을 받았으며, 1호 건조기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시에는 00일이 경과한 후 보고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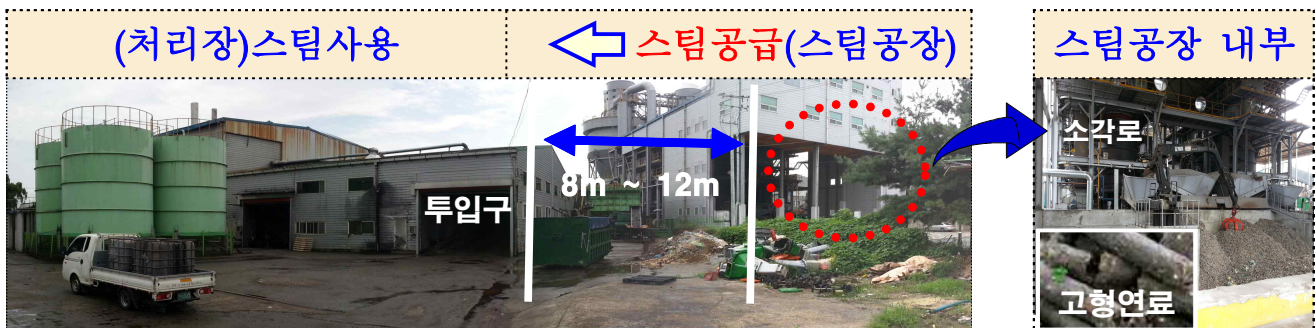
우 수 사 례

- 현 도시가스 보일러 스팀생산 건조 → 인접 스팀공장 스팀구매 건조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연료비 절감사업 추진

- 그간 도시가스 사용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을 생산 건조기에 공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왔으나,
- 앞으로는 인접 스팀공장에서 스팀을 공급받아 건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연료비용 절감(연간 **2억7천만원**)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27(팔복동4가)
- 처리능력 : 300톤/일 - 처리량(평균) 248톤/일
- 수탁자 : (주)대원물산, 대표 팍락규
- 위탁기간 : 2012. 5. 15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완공 이전시까지
※ 최초 : 2002.05.15 ~ 2012.05.14.(10년)
- 처리공정 : 반입 ⇨ 파쇄·선별·탈수 ⇨ 건조 ⇨ 부산물 ⇨ 유기질비료 원료공급



□ 추진사항

- 연료비용 절감방안 논의 [전주시 ⇨ (주)대원물산] - 2014. 07. 02
- 스팀공장에 스팀사용 제안 [(주)대원물산 ⇨ 스팀공장] - 2014. 08. 26

□ 부서 검토의견

- 스팀공장 스팀사용 건조방식으로 개선시 연간 **2억7천만원 절감**

- | |
|---|
| ① 연간 도시가스 요금 : 1,536,008천원(사용량 1,507,038m³) |
| ② 개선시 스팀 요금 : 1,258,583천원(사용량 25,685.38톤) |
| ③ 예산절감액(①-②) : 277,425천원 |
| ※ 도시가스 m³당 단가 1,004.69원, 스팀 톤당 단가 49,000원 |

□ 금후계획

- 전주시·스팀 공급자·사용자 간 3자 계약 체결 : 2014. 10. 17
- 스팀 공급 설비공사 설계 : 2014. 11. 01
- 스팀 공급 설비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 : 2015. 02. 01